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63,081,165	40,892,435
일반회계	1,124,216,342	33,726,490
특별회계	238,864,823	7,165,945
공기업특별회계	178,699,441	5,360,9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0,023,763	2,700,7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675,678	2,660,270
기타특별회계	60,165,382	1,804,961
주택사업특별회계	1,927,000	57,81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20,476	222,614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8,199,516	845,985
교통사업특별회계	17,517,031	525,511
대지보상특별회계	1,139,295	34,179
기반시설특별회계	44,716	1,341
수질개선특별회계	3,213,348	96,400

제 2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34,73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